

서울특별시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167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10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 2. 제안이유

- 가. 외국인 직접투자 타겟팅·유치·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서울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유치 전담 창구 구축을 위해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의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6조
-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계획(투자창업과-5787, 2019. 5. 31.)
-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운영계획(투자창업과-8940, 2019. 8. 21.)

○ 추진 필요성

- 외국인투자자 및 창업가와 소통하며 전문지식,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업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때 효율이 극대화되며 외국인투자 및 창업분야는 네트워크 활용이 중요한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다. 민간위탁 사무내용

○ 외국인 비즈니스 행정서비스 종합지원

○ 외국인직접투자 및 창업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시장분석, 법률·회계, 투자절차·지원제도 등 외국인 투자·창업 원스톱 지원
- 해외투자자 탐색, 투자적격 기업 및 시설 현지 제공 등 해외 마케팅
- 투자신고·법인설립·시설 중개 등 투자·창업 1:1대행 서비스 제공
- 비자신청 지원, 은행·교통·통신·주거·교육 등 정착서비스 제공
-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대책 수립 시행

- 외국인 창업지원 교육 및 무역아카데미 운영
- 인베스트서울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 기타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민간위탁 개요

- 위    치 :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6층
- 규    모 : 337m<sup>2</sup>
- 시설개관 : 2019. 12월 예정
- 구    성 : 헬프데스크, 전문상담실, 사무공간, 창업보육공간 등
- 운영방식
  - 정보제공 수준을 넘는 투자유치 밀착 서비스 제공
  - 신규투자 유치 및 기 진출한 외투기업의 증액 투자 유도
  -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통합·운영을 통한 외국인 창업지원 기능 수행
- 소요예산 : 3,889백만원 ('20년 기준)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협약

마.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와 안정적 창업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울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조성하고 이를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음.

### 나. ‘인베스트서울센터’ 조성 및 운영 개요

- 국내총생산(GDP)의 21%를 창출하고, 금융분야의 50% 이상이 집중된 서울은 국내 투자 유치액의 38.2%<sup>1)</sup>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매력적인 대상지로 각광받고 있음.
  - 반도체·기계 등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ICT,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한류연계형 고급소비재, 문화상품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 지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 “비즈니스센터”) 3개소(종로, 강남, 동대문)를 운영 중에 있음.

1) 「2019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1962년~2019.3/4까지 서울시의 투자유치실적은 1,307억 3천8백만불(신고금액 기준)로 국가 전체의 38.2%를 차지하고 있음(도착금액 기준은 1,156억 9백만불로 52.9%임). 산업통상자원부(2019.10).

### 〈인베스트서울센터 현황〉

시설명	인베스트서울센터(종로)	인베스트서울센터(강남)	인베스트서울센터(동대문)
			
소재지	종로구 종로 38, 6층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상시전시장 2층	중구 마른대로 146 청인빌딩 7층
개관일	2008.1.23	2010.5.17	2015.10.7
시설규모	337㎡	158㎡	208㎡
시설용도	외국인 투자 활성화, 외국인 정주지원 등	창업대학, 창업보육,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외국인대상 비즈니스 상담, 창업교육, 한국어교육 등

- 2008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이 위탁 운영 중인 비즈니스센터는 서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과 창업공간, 보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말로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 최근 3년간 비즈니스센터의 실적을 보면, 비즈니스 상담, 창업진수,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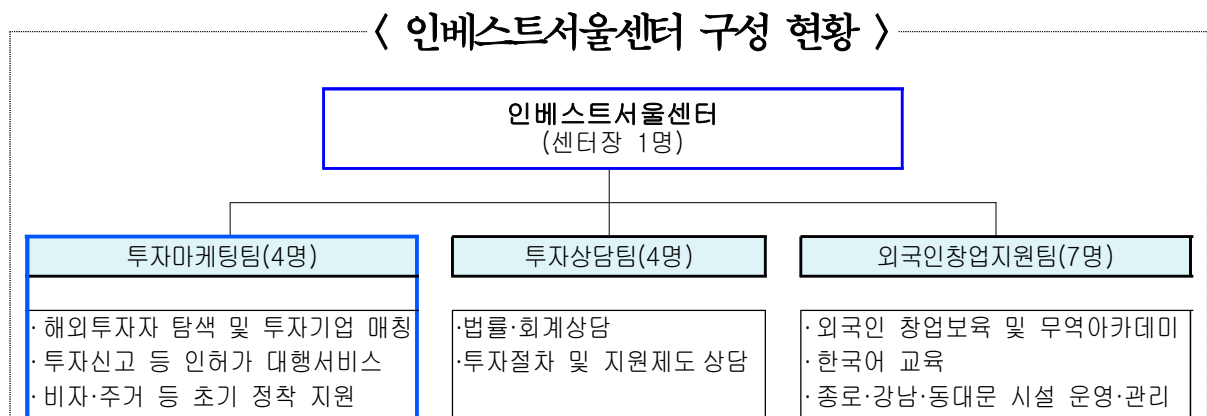
### 〈 비즈니스센터 주요 실적 〉

사업연도	주요 실적현황
2016	- 비즈니스 상담건수(3,029건) - 창업건수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액 (70건/52억 9,700만원) - 창업교육생 수(722명) - 지원 기업 수(225개사)
2017	- 비즈니스 상담건수(3,008건) - 창업건수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액 (90건/78억 6,200만원) - 창업교육생 수(1,046명) - 지원 기업 수(549개사)
2018	- 비즈니스 상담건수(5,348건) - 창업건수 및 외국인직접투자(FDI)액 (133건/102억 1800만원) - 창업교육생 수(1,781명) - 지원 기업 수(595개사)

- 서울시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반영한 투자유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 하에 기존의 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외국인직접투자 타겟팅·유치·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원스톱 투자촉진 지원기관인 ‘인베스트서울센터’를 올해 12월 개관할 예정임.
- 아시아의 경쟁 도시인 홍콩, 싱가포르 등은 이미 투자 관련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공간을 조성·운영 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정부 산하기구인 ‘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산업단지와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도적 투자유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

## 다. 인베스트서울센터 민간위탁의 타당성

- 인베스트서울센터의 주요 사무는 ▶외국인 창업교육 및 보육 ▶외국인 투자 및 창업지원 홍보 ▶외국인 정주 및 정착 지원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와의 소통, 창업분야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등이 주요한 업무임.
- 따라서 외국인투자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태계 형성과 활용이 중요한 바, 서울시 직영보다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수탁기관으로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사업을 10년 이상 운영해 온 '서울산업진흥원'과 수의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 서울산업진흥원은 2003년 '외국인지원센터팀'을 시작으로 2008년 서울글로벌센터 개원부터 외국인비즈니스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위탁사무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 다만, 위탁사무 중 “주거바우처 지원”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월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업무와의 연계성을 발견하기 어려움.
-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와 제14조의2)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투자와 관련된 임대 용지, 공장시설, 고용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을 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거비 지원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2)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④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자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 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 인베스트서울센터 개요

### 추진배경

- 외국인직접투자 타겟팅·유치·관리 업무를 전담할 원스톱 센터 구현
  - 국내 투자유치액의 35%를 점유하는 서울의 위상을 고려하여 지원거점 구축
  - 투자자 출신지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인투자 종합 Help Desk 필요
- 서비스업 중심 서울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유치 전담 창구 구축
  - Invest Korea는 산업단지·제조업 중심 투자유치로 지자체 주도적 투자기능 미흡
  -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도시는 투자관련 서비스를 종합제공하는 공간 운영

### 시설 개요

- 위 치 : 종로 서울글로벌센터 6층
  - 도심(종각역)에 위치하고 출입국관리, 생활지원센터 등 유관서비스 접근성 용이
- 규 모 : 337  $m^2$  (전용면적 기준)
- 공간구성 : 헬프데스크, 전문상담실, 사무공간, 창업보육공간 등

### 운영계획

- 외국인 투자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기진출 외투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외국인직접투자 상담 및 안내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해외 투자 마케팅
  -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해외투자자 탐색 및 기업매칭

○ 해외 앰배서더 위촉

- 국내에 거주하며 글로벌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국인 선정

○ 투자 1:1 서비스

- 투자유치·법인설립 등 서울 진출 쏠 과정 밀착 지원

○ 초기정착에 필요한 전반적 생활지원을 위한 정착서비스 제공

[참고자료 2]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기존 위탁사무의 신규 민간위탁으로의 처리 기준

- 관련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이미 추진 중인 사무는 그 사무 수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당초 위탁사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무를 관리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
  - 위탁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예산지원형 ↔ 수익창출형, 시설형 ↔ 사무형
    - ※ 다만, 당초 신규 민간위탁 추진 시, 시설형·사무형의 위탁유형을 착오 분류한 경우에는 재위탁·재계약 추진 시 위탁 유형을 정정할 수 있음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과 전혀 다른 사무를 추가하거나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 위탁하는 공유재산을 추가하는 경우 등
  - 기존 위탁사무를 두 개 이상의 위탁사무로 분리하는 경우
    - 시설/시설, 사무/사무, 시설/사무로 분리시 각각 신규 추진
    - ※ 소관부서가 분리되더라도 위탁사무 자체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음(다만, 분리된 부서 중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함)
  - 기존 위탁사무의 수행을 1년 이상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탁하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던 사무를 이관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기

시의회 동의(주관부서)

### ○ 시의회 동의 대상

- 동의 대상 : 해당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여부
  - 민간위탁 관련 추진절차(예산안 의결,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협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 의회 동의 추진

###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절차 (시행규칙 §2②)

- 주관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회 동의 추진
- 의안 처리절차는 일반안건 처리절차에 의함
  -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 안건 제출 서식 : 시행규칙 §2②

예산편성(주관부서)

### ○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의회동의 → 예산안 의결 의무화
- 사전절차 대상 : 민간위탁조례(제4조의3 등)에 따른 시의회 동의 대상 사무
  - ※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회 동의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